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26호 2014. 9. 29.(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78호(2014년도 6월말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26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안) 4

회							
람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I.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4.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54-17번외 11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또는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4. 9. 30 ~ 10. 30
2.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구 세무과에 제출
 - 인터넷접수 : <http://etax.incheon.go.kr>에서 작성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749-7482)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내역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가격결정사유	사용승인일 (증축, 합병)	건물 구조	공시면적(m ²)		산정가격	검증가격	결정가격 (검증가격의 80%)
					건물	토지			
1	옥련동	신축	2014-02-24	철근	130.77	159.00	274,941	274,941	219,000
	254-17								
2	옥련동	토지 합병	2014-03-03	연와	67.90	215.00	181,855	181,855	145,000
	266-17								
3	옥련동	용도 변경	2014-04-24	철근	97.08	96.02	138,346	138,346	110,000
	348-93								
4	옥련동	신축	2014-02-24	철근	37.38	31.13	56,172	58,146	46,500
	368-4								
5	옥련동	신축	2014-01-03	철근	296.34	134.71	345,805	349,858	279,000
	369-7								
6	옥련동	신축	2014-04-11	철근	661.43	270.86	752,951	776,528	621,000
	400-1								
7	옥련동	증축	2014-02-28	철골	217.25	231.87	466,862	466,862	373,000
	420-1								
8	옥련동	신축	2014-04-10	철골	148.10	87.27	240,544	240,544	192,000
	457-1								
9	옥련동	신축	2014-03-18	철근	228.16	284.40	411,700	411,700	329,000
	513-8								
10	칭학동	토지 합병	2014-04-07	연와	85.78	248.00	191,846	191,846	153,000
	35-81								
11	칭학동	용도 변경	2014-05-23	연와	83.28	68.56	81,627	81,627	65,300
	547-2								
12	동춘동	용도 변경	2014-02-21	경철	64.66	60.43	98,286	98,286	78,600
	1113-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신청사유		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에 공시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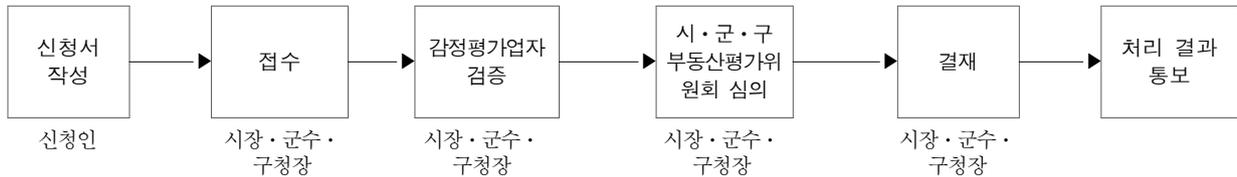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적법한 광고문화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

정비시범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42, 40번길 5, 40번길 7, 40번길 11, 40번길 21, 40번길 25, 40번길 29, 40번길 35, 40번길 39, 40번길 43, 40번길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23
2. 구 역 : 별도도면 표기구역 **【별표1】**

제3조(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약국은 가로형 간판 이외에 1면의 면적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소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미용)업은 싸인볼을 세로20cm 이하, 둘레15cm 이하의 규격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광고물의 바탕색을 원색으로 표시할 경우, 그 표시 비율이 전체바탕색의 50%이하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단, 기업의 C.I 는 이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 ③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광고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 방식과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을 권장하며, 점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⑤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 할 수 있고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권장하며 한글이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저속한 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제4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 정면 1층에는 가로형 간판을 파사드를 이용한 입체형의 모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층이상 5층까지는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간판에 표시되는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내에서 1층을 50cm 이내로 하고 1층 증가시마다 5cm씩 증가하여 최대 120cm 크기 이내로 한다. 또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업소폭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을 5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6층이상에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구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4. 건물의 6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3면 중 한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면의 업소명은 달리할 수 있다.

②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1.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간판규격은 가로 최대 80cm 이하 (게시틀 포함100cm), 세로 100cm, 두께 3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을 금지한다

④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제5조(광고물실명제)

광고물시범거리안에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지역내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 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연수구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에 의한다

